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수영구보
호외 제286호 2014.3.28(금)

규칙,고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도로명주소 고시 ----- 10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수영구 · 편집 : 문화공보과 (610-4071~3)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3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4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4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제72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2. 인권증진 추진에 관한 사항
- 73.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총무과 분장사무 제33호를 삭제하고, 제111호부터 제1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1. 장학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112.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총괄, 민원처리

같은 표 중 문화공보과 분장사무 제10호, 제15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재무과 분장사무 제7호 중 “국·시·구유재산”를 “시·구유재산”으로 하고, 제8호 중 “국·공유재산”를 “공유재산”으로 하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민원여권과 분장사무 제8호를 삭제하고, 제67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7.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계획
- 68.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9. 사전정보공개 목록 공표
- 70.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처리
- 71. 원문정보공개 업무

같은 표 중 주민생활지원과 분장사무 제5호 중 “장학계정”을 “장학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한다

같은 표 중 복지서비스과 분장사무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장애인복지계정”으로 하며, 제2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33호 중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하며, 제40호를 삭제하고, 제49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여성)
- 4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51.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52.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청소행정과 분장사무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분수대 오물처리, 시설물 주변 및 광장 청소

같은 표 중 환경위생과 분장사무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0.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수질관리 및 검사(정기 월1회)

같은 표 중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6.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조경시설(화단 및 수목관리)

같은 표 중 건설과 분장사무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3. 건설기계사업 관리
- 10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
- 105.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방안
 - 분수가동 및 운영,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공급수 교체 및 내부청소
 - 바닥포장 및 분수구조물 관리, 유지관리(전기 및 수도요금)

같은 표 중 토지정보과 분장사무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보건소 분장사무 제61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신고, 지도에 관한 사항
- 62. 치매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도서관 분장사무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U-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신설사무를 추가하고 부서 간 불분명한 사무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무조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사무 반영

-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사무를 관련 부서의 분장사무에 반영 ▶ 건설과-15582(2013.8.5)호와 관련
 - ▶ 총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나. 법개정 등으로 신설업무 및 기 분장되었으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무 반영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사업 관련 업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지도에 관한 사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등 사무폐지

- 국유재산업무(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 각본심사, 공연신고, 반공단체 지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3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4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전결사무 정비 및 전결권 조정

- 국유재산 전결사무 삭제
- 정수물품 책정 부구청장 ▶ 국장으로 하향 조정
- 기록물 관련 용어 정비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개정
-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명칭 개정
- 건설기계사업 등의 신고 및 조종사 면허 관리 신설
- 보건소 관련 업무 정비

나. 신규 및 기존사무의 전결사항 누락에 따른 전결사항 정비

-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영
- 보훈회관 관리
- 아동보호구역 지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통합관제센터 업무 ▶ 안전관리과 정비
-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추진 사업

다. 현재 수행하지 않는 사무전결권 폐지

- 복권발행, 확인평가, 회계감사, 보고심사, 보고통제
- 저소득주민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동에 수행하지 않는 업무
 - 노인 건강진단
 - 국가유공자 거주지 이동신고수리
 - 구인구직 신청,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접수 및 추천
 - 중, 고교생 사회봉사 활동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2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수영구청장

○ 도로명주소 : 감포로 53 외 6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종전주소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 참조(5건) | | | | |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
| 해 당 없 음 | | |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
|-------------|----------------|------|----------|
| 별지 참조(2건)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051-610-4764)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www.suyeong.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